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견

의안 번호	97
----------	----

제출년월일 : 2004. 4. 2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도심속의 푸른 녹지공원인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 기여와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은 물론 안락한 시민편의 쉼터인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함
- 취득대상 재산목록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지번	토지		건물		소요예산 (감정가추정)
		면적(m <sup>2</sup> )	층별	구조	면적(m <sup>2</sup> )	
쌈지공원 조 성	괴정동 903-1	148 (44.8평)	지상1층	연와조	64.46	291,003
	괴정동 904	114 (34.5평)	지상2층	벽돌스라브	57.95	103,454
	괴정동 905	116 (35.1평)	지상1층	목조	36.36	105,269
			지상1층	블럭조	75.44	
	괴정동 932	1148중319 (96.5평)	지상1층	목조	124.63	627,230
			지상1층	목조	23.14	
			지상1층	목조	46.94	
괴정동 932-2	33 (10평)				64,885	
계	730 (221평)				428.92 (129평)	1,191,841

### 3.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구분		합계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비고
		필지 (동수)	면적 (㎡)	추정금액 (천원)	필지 (동수)	면적 (㎡)	추정금액 (천원)	필지 (동수)	면적 (㎡)	추정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5 건물 7 기타	730 428.92	1,191,841	5 7	730 428.92	1,191,841				
	1.매입	토지 5 건물 7 기타	730 428.92	1,191,841	5 7	730 428.92	1,191,841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허가 및 대부	토지 건물 기타										

## 2004년도 취득재산 목록(7-2)

(단위 : m<sup>2</sup>, 천원)

재산의 표시				추정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현소유자	취득 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면적 (규모)						
계				1,191,841					
토지	괴정동 903-1	대	148	291,003	2004, 하반기	삼지공원 조성	박종맹	사하구	
	괴정동 904	대	114	103,454	"		박종맹		
	괴정동 905	대	116	105,269	"		김성숙		
	괴정동 932	대	1148중319	627,230	"		이창호		
	괴정동 932-2	대	33	64,885	"		이창호		
건물	괴정동 903-1	연와조	64.46		"		박종맹	매입후 철거	
	괴정동 904	벽돌스라브	57.95		"		박종맹		
	괴정동 905	목조	36.36		"		김성숙		
		블럭조	75.44		"		김성숙		
	괴정동 932	목조	124.63		"		이창호		
		목조	23.14		"		서순이		
		목조	46.94		"		이창호		